

2013년도 산학협력단 제9차 운영위원회 회의 기록지

일 시: 2013년 12월 12일(목) 오후 3시

장 소: 산학협력단 소회의실

참석위원: 편용국 위원장, 안영일 위원, 서동엽 위원, 이흥기 위원
송태섭 위원, 홍성배 위원, 장영중 위원

간 사: 지금부터 2013년도 산학협력단 제9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본 위원회 위원장이신 편용국 산학협력단장님의 인사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박근혜 정부 들어 산학연의 미래비전과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는 이 시점에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우리 산학협력단의 발전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까 합니다. 아낌없는 조언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회를 통해 2014년도 산단 운영에 기틀을 마련하였으면 합니다.

안건1 :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 심의사항에 예산결산 자문 및 심의 기능 규정을 신설(산학협력단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간 사 : (제안설명을 한다.)

위원장 : 폴릭텍 대학도 운영위원회에서 자문 및 심의를 동시에 진행한다는 규정이 있나요?

이흥기 위원 : 우리 대학도 이와 유사한 규정이 있습니다.

위원장 : 한중대학교는 어떠신지요?

송태섭 위원 : 학교예산 심의를 참여했지만 산단으로 국한된 적이 없어 비교가 어렵습니다.

안영일 위원 : 민간에서 지원할 경우에 예산 심의를 어떻게 하는지요?

간 사: 위원회를 통해 심의합니다.

서동엽 위원 : 본 안건 상정에 있어 무엇을 인용하였다고 했습니까?

간 사: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산학협력단 회계처리 규칙 6조입니다.

서동엽 위원 : 회계처리 규칙을 살펴건대 예·결산 자문기구에 자문한 후 학교의 장에게 예산안을 제출하면, 학교의 장이 이를 심의 확정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는 위원회가 규칙에 명시된 바와 같이 자문 기능을 할뿐 심의의 기능은 학교의 장이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계처리규칙은 훈령입니다. 상급기관 훈령이나 규정의 범위 내에서 정해야 하는데 본 안과 같이 규칙과 상충되게 만들면 효력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 처리에 있어 조문에 자문만 넣고 심의는 삭제하는 등 수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단서 조항에 재원별 지원기관의 승인사항은 심의를 하지 않겠다는 것인가요?

간 사: 국가에서 정해진 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별도 운영위원회가 자문 및 심의를 갖고 있으므로 제외한다는 내용입니다.

서동엽 위원 : 재원은 국비만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간 사: 현재 별도의 위원회가 구성되어 진행되는 사업은 전액 국비 보조사업 입니다.

서동엽 위원 : 국비만을 재원이라고 하는 것은 안 되고, 국비라고 명시해야 합니다.

위원장 : 국가에서는 산단 활성화를 위해 대학과 분리시켜서 회계운영을 합니다. 특별회계와 기성회계가 있는데 산단 운영비의 경우, 전액 도비로 운영되기 때문에 도 의회에서 심의 확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심의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 산단 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할 여지가 없다는 것이고 교육역량강화사업 등 국비 보조사업 역시 이미 심의가 되어 내려오기 때문에 학교장은 경유하는 의미입니다. 산촉법에 관련해서 특별회계와 분리해서 대학에서 운영위가 심의하고, 총장 하에 법인을 두고 전결규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공립 모두 이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구만 보면 좀 오해가 있을 수 있지만 여러 대학을 조사하여 본 안건을 상정한 것입니다.

홍성배 위원 : 특별회계는 어떻습니까?

위원장 : 특별회계는 도 의회 최종 승인됩니다. 산단의 경우 특수법인이라 심의 확정의 성격이 다릅니다. 예컨대 한국사학진흥재단에도 산단 자체 운영위원회 결과를 준용합니다.

서동엽 위원 : 학교는 특별회계입니다. 도는 일반회계입니다. 도에서 학교에 전입금을 주며 학교 자체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도의회에서 심의를 받습니다.

위원장 : 민간경상보조로 1억3천을 보조 받습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도에서 보전한 것이기 때문에 오해가 없어야 하며 따라서 이번 안은 가결되어야 합니다.

서동엽 위원 : 산단 운영규정은 학칙에 의해 정해진 것이고, 학칙과 산촉법이 상충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 어떤 부분이 상충되는지요?

서동엽 위원 : 자문을 받아서 학교장에게 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는 자문만 받는 것입니다.

위원장 : 자문과 심의를 운영위원회에서 같음할 수 있습니다.

서동엽 위원 :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것은 교과부 규칙과 상충되기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송태섭 위원 : 자문과 심의는 좀 다르다고 판단됩니다.

서동엽 위원 : 산단에서는 자문만 하고, 심의확정은 학교장이 하는 것이 올바른 해석입니다.

위원장 : 산단장은 전결 규정이 있고 이를 근거로 위원회에서 심의 권한을 주는 것입니다.

서동엽 위원 : 행여 지금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받으면 심각한 문제가 수반됩니다. 예산편성은 산단이 하고, 심의확정은 학교장이 하는 것이 규칙에 분명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장영중 위원 : 학교장이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심의를 한다면 이와 같은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서동엽 위원 : 위의 법령과 상충되어서는 안 됩니다.

안영일 위원 : 학교장이 위원장이 될 수 없다는 말씀인가요?

장영중 위원 : 학교장을 위원장으로 두고 심의를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서동엽 위원 : 심의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학교장이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회 때 심의까지 할 수는 없습니다.

홍성배 위원 : 산단 운영위는 심의 기능을 할 수 없습니까

서동엽 위원 : 다른 분야는 심의할 수 있지만 예결산 부분은 분리되어야 합니다. 산단에서 다 하면 안 되고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홍성배 위원 : 총장이 심의한다면 그 심의규정은 없습니까?

서동엽 위원 : 대학본부에서 심의위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홍성배 위원 : 국가에서는 예산심의를 강화하라는 규정이 있다 보니 심의위를 구성해서 강화하라는데, 예산심의라는 것은 외부기관에서 전문가를 데려와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 (자료배부 전남도립대, ~~국립대~~ 제주대, 서울시립대) 교과부 질의사항이나 타대학 사례를 봐도 운영위원회가 심의 기능을 갖는 것은 전혀 문제 되지 않습니다.

서동엽 위원 : 산단 운영규정 12조 결산이 있는데...총장에게 제출하고, 결산을 심의 확정하는 것은 총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서로 배치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위원장 : 규정이 오래되고 문구가 애매한 사항이 많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서동엽 위원 : 심사숙고해서 충분히 자료를 수집하고, 교과부 질의회신 후에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올해 강원도 종합감사에서 대학본부에 산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이 지적되어 확인서를 쓴 바 있습니다.

위원장 : 그것은 기한을 지키지 못한 문제입니다. 감사지적은 시기를 지정한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강원도 감사로부터 적극적인

소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 사: 잠시 말씀을 드리자면 자문과 심의로 기능을 어디서 갖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데 위원회 업무 담당으로써 자문과 심의를 함에 있어 외부위원을 선정해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결과보고를 통해 총장에게 확정 받는 것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산단의 설립취지를 감안하여 산단 운영의 독립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엽 위원 : 추가로 말씀드리면 공무원은 법과 규정에 근거해서 일을 합니다. 그걸 벗어나면 그건 재량권의 일탈입니다. 규정 범위에서 일을 해야 합니다.

간 사: 법의 테두리 안에서 업무를 해야 한다는 말씀에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학교의 장의 행정권한은 본부(사무국)에 있다고 사료되지만 사무국에서 심의하라는 법령이나 규칙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서동엽 위원 : 기관의 장이 모든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조기구에서 일을 해서 총장이 결재를 하는 것입니다.

송태섭 위원 : 산단은 별도의 법인입니다. 독립이라는 것은 모든 권한을 주고 최종 감독을 하는 것이고, 감사를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이흥기 위원 : 대학별로 다르기는 한데,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도, 시, 지자체 사업을 하는데 그 예산에 대해 감사를 받습니다. 도비를 받으면 감사를 받고, 잔액은 반납하는 것이지요. 심의가 끝나면 총장에게 통보를 하는 것입니다. 총장은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면 다시 운영위를 거치면 되는 것으로 모든 사업은 산단의 단장이 책임지는 것입니다. 학교 내에 산단이 있지만 산단은 독립된 기관입니다. 또한 각 사업단 별로 수익금은 내년도 대응투자로 넘어갑니다. 종국에 모든 대학은 산단에 대해 총장이 관여하고 감사하지만 결정적인 부분은 책임이 없습니다.

송태섭 위원 : 감독은 하지만 독립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심의권한을 주지 않으면 독립성이 없는 것입니다.

서동엽 위원 : 우리가 규정을 확대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위원장 : 저는 법적으로 문제가 전혀 안 된다고 사료됩니다.

간 사 : 산단회계처리규칙에 있어 문구상의 해석으로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데, 심의확정의 부분에 있어서 단순한 결재로 볼 것이냐 별도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가 관건입니다.

송태섭 위원 : 장에게 결재를 받으면 그것을 확정으로 봐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서동엽 위원 : 산단에서 예산편성을 모두 하고, 대학본부를 배제하겠다는 것인가요?

위원장 : 그건 아닙니다. 대학의 장이 예산심의를 확정해줘야 합니다. 저희가 대학의 장을 경유합니다.

송태섭 위원 : 운영위원회에는 기능에는 당연히 심의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명칭도 중요합니다. 자문위원회는 자문만 합니다.

서동엽 위원 : 산단 운영규정과 교육부 규정과 일맥상통하게 만드려면 '예결산 자문기구'에 자문한 ~~이후~~ 산단자문운영위원회로 바뀌어야 합니다.

송태섭 위원 : 운영위원회는 운영 전반에 대해 책임지는 것입니다.

홍성배 위원 : 대학 총장이 꼭 주관하는 게 아니고 자체에서 심의를 하고 총장에게 결재를 받는 것이 맞습니다.

간 사 : 지방자치와 같이 의회와 집행부처럼 예산안 심의에 있어 견제기관이 없습니다. 견제기관이 어디냐에 있어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를 견제기관으로 볼 것이냐, 대학 내 다 부서로 견제기관을 볼 것이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엽 위원 : 산단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자문하고 심의합니다. 산단장과 위원장이 동일인입니다.

이흥기 위원 : 산단장이 위원장이어도 심의권한은 위원들에게도 있습니다. 위원장이 모든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산단은 비영리 단

제입니다. 수익금을 학생들에게 나눠주자는 것입니다.

서동엽 위원 : 상위 규정에 의해 절차를 제대로 거치자는 것입니다.

송태섭 위원 : 확정까지 운영위원회에서 한다면 문제겠지만 심의까지만 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된다고 봅니다.

장영중 위원 : 산단에서 심의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규정도 없으니 학교의 장에게 재심의나 확정 권한을 넘기는 게 어떨까요?

위원장 : 그런 경우는 없고, 그런 절차는 좀 어렵습니다.

간 사 :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신 관계로 제1안에 대한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참석위원 7명중 찬성 6명과 반대 1명의 심의의견으로 원안가결)

안건2 : 단장의 임명으로 산학협력단에 외부전문가 감사 1인을 두어 재산 및 회계에 관한 감사 시행 등 감사의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자는 내용의 규정 개정(감사규정 일부개정안)

간 사 : (제안설명을 한다.)

위원장 : 감사의 종류는 많습~~니다~~^{니다}. 기본적으로 매년 시행하는 감사는 회계감사이므로 감사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송태섭 위원 : 내부감사에 대한 규정인 것 같은데, 외부감사는 공인회계사 등 객관적인 기관에 의뢰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홍성배 위원 : 기존에 산단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적이 있나요?

간 사 : 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는데 작년에 대학 본부에 요청을 하여 처음 시행했습니다.

위원장 : 회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공인회계를 선임해서 매 1년마다 감사를 받고, 정규 감사는 도에서 2년마다 받습니다.

송태섭 위원 : 내부감사는 특별한 자격이 없어도 되니, 단장과 관련이 없는 사람이면 됩니다. 단, 외부감사는 공인회계사여야 합니다.

장영중 위원 : 현행보다 개정안이 좀 강화된 것 같습니다. 외감법

상 도립대가 대상은 아닙니다. 회계사를 선임하되 비용을 좀 낮추는 것이 적절합니다.

간 사: 굳이 산단 내에 감사인을 지정해서 감사를 받으려고 하는 이유는 저희 회계 파트가 취약하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홍성배 위원 : 지자체도 공인회계 감사를 받는 추세입니다. 공인회계는 복식부기에 의해 감사를 합니다. 문제는 예산입니다.

위원장 : 체계화되지 않았고, 결산이 제대로 안 되어서 이번부터 제대로 체계를 잡아보자는 취지입니다. 비용문제는 합리적으로 생각해보겠습니다.

홍성배 위원 : 정부회계와 공인회계사의 관점이 많이 다릅니다. 실익이 없는 것 같습니다. 부정적인 집행부분을 잡는 것은 괜찮다고 봅니다.

송태섭 위원 : 틀을 잡는 데는 공인회계사를 쓰는 게 좋다고 봅니다.

위원장 : 회계감사도 교과부에서, 1명이 왔는데 요즘은 2명이 옵니다. 회계에서 문제가 되면 패널리티를 받습니다.

서동엽 위원 : 산단운영규정과 감사규정 중 어떤 걸 우선 적용하나요? 감사규정 7조의2 3항과 산단 운영규정 13조가 중복됩니다.

간 사: 감사인을 산단에 배치한다는 내용입니다.

서동엽 위원 : 감사인을 지정해서 감사를 받고, 운영규정에 의해 또 감사를 받겠다는 말인가요?

간 사: 총장이 요구해서 감사를 받을 수도 있고, 단장이 요구해서 감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산단 내에 감시인을 배치한다는 취지입니다.

홍성배 위원 : 그런 취지라면 감사가 아니라 고문을 두는 게 맞다고 봅니다.

송태섭 위원 : 이건 내부감사규정이고, 산단 운영규정은 외부감사규정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서동엽 위원 : 이건 내용이 중복됩니다.

간 사: 규정이 중복되더라도 내용이 상충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동엽 위원 : 똑같은 내용을 왜 추가해서 감사규정에 넣느냐는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산단 자체감사 소홀로 지적을 받았습
니다. 강원도 감사에서 자체감사 소홀을 지적한 취지는 산단 자체
가 아닌 대학 자체에서 산단에 대한 감사를 소홀히 했다는 것입
니다.

위원장 : 모든 대학이 감사보고서를 중앙부처에 보고하는데, 외부
감사와 내부감사 보고서가 올라가야 합니다. 우리 대학만 다르게
일을 하기엔 부담이 있고, 좀 제대로 가자는 취지이고, 규정이 잘
못되었다면 개정하고자 합니다.

간 사 : 원활한 흐름과 전반적인 자체감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수시감사를 총장권한으로 실시하는 타대학의 사례가 많습니다.

송태섭 위원 : 외부전문가 감사 대신 독립된 감사라는 용어를 사용하
는 것이 어떠신지요. 독립된이란 용어는 산단의 영향을 전혀 안받는
사람, 즉 전문가라 한정 짓지 말고 다소 자유로운 용어를 쓰자는 것
입니다.

간 사 : 외부 전문가의 용어는 산촉법 시행령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
럼 외부전문가란 말을 삭제하고 수정 의결이 가능하신지요. 공증된
전문가를 영입하여 산단 운영에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금번 감사규정
안을 상정하기 이른 것입니다.

서동엽 위원 : 규정을 너무 상세하게 만들어 놓는 것은 나중에 문제
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간 사: 감사규정 제7조 2항에서 외부전문기 용어를 삭제하고 3항
(운영규정에 이미 내용이 들어가 있으므로)을 삭제하는 것에 대해 가
부를 심의의결에 기입하여 주십시오.

이흥기 위원 : 감사규정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서동엽 위원 : 감사와 감사인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감사단이란 용
어를 써야하는 것이 아닌가요.

간 사 : 감사개정안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참석위원 7명중 찬성 1명과 반대 6명의 심의의견으로 부결)

안건3 : 2013년도 3차 추가경정 현금예산 수정(안)에 대한 자문 및 심의

간 사 : (제안설명을 한다.)

간 사 : 2013회계연도 강원도립대학 산학협력단 현금예산은 현금유입액 3,050,776,020원, 현금유출액 6,290,744,837원, 기초의 현금 3,789,884,854원, 기말의 현금 549,916,037원으로 하는 2013년도 3차추경에 대한 안건입니다. (예산 변동사업에 대해서 설명, 단위사업별 세부내역 설명)

위원장 : 예비창업, 장학금은 국가에서 사업별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학기별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추경을 하는 것입니다.

간 사: 예산안은 이미 심의를 받아 지난 11.22. 확정된 내용인데 다시 상정한 이유는 산단 예산의 특수성을 감안하고 전용 등 예산 변동 처리가 불가피하여 다시 상정하는 것입니다. 산단에서 운영하는 예산안이 일반 지방행정에서 쓰는 예산안과 다소 차이가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섭 위원 :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회의 전 서류 배부 등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동엽 위원 :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본 안에 대한 의결은 예산안에 대한 자문 및 검토 행위에 지나지 아니하며, 심의와 확정은 엄연히 총장에게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합니다.

(참석위원 7명중 찬성 7명-조건부 1명 심의의견으로 원안가결)

안건4 : 2014년도 현금예산 수정(안)에 대한 자문 및 심의

간 사 : (제안설명을 한다.)

간 사 : 2014회계연도 강원도립대학 산학협력단 현금예산은 현

금유입액 467,765,057원, 현금유출액 667,019,452원, 기초의 현금 549,916,037원, 기말의 현금 350,661,642원으로 하는 2013년도 3차추경에 대한 안건입니다. (단위사업별 세부내역 설명)

홍성배 위원 : 일반관리비 예산이 1억5천이 늘었네요. 창업 인건비가 새로 생겼네요. 갑자기 인건비가 증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간 사: 산단내에 무기계약직 4명이 있는데 민간경상으론 충당을 다 할 수가 없어 계상된 것입니다.

홍성배 위원 : 2013년도는 어떻게 운영 했습니까.

위원장 : 당초예산은 보통 예상치를 사업부서에서 파악하여 성립되고 추경시에 변경이 됩니다. 기말의 자금에서 차액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홍성배 위원 : 그렇다면 정확한 편성을 위해 시기를 조정해야 하지 않습니까.

간 사: 그 말씀에 동감하지만 교과부 규칙에는 회계개시일 30일 전까지 다음연도 예산안이 확정되기 때문에 편성 시기의 조정은 어렵습니다. 물론 산단 성격상 회계연도 시작부터 시작하는 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타대학 경우 규칙과 달리 3월달부터 시작하는 회계연도를 시작하는 곳도 종종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흥기 위원 : 전년도와 비교하여 전체 예산액이 확연히 감소하였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간 사 : 2013년도 당초예산에 포함된 창업보육센터 공사비가 사업이 완료되어 예산액 32억원 가량이 감소한 것입니다.

서동엽 위원 : 마지막으로 거듭 말씀드립니다. 본 안에 대한 의결은 예산안에 대한 자문 및 검토 행위에 지나지 아니하며, 심의와 확정은 엄연히 총장에게 있습니다.

(참석위원 7명중 찬성 7명-조건부 1명 심의의견으로 원안가결)

위원장 : 폐회를 선언함

작성자 : 간사 산학관리팀장 김종우

